

<간이투자설명서>

기준일: 2025.03.17

한화 Japan REITs 부동산 투자신탁 1호(리츠-재간접형) [펀드코드 : 48063]

| 투자 위험 등급 | | | | | | 한화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[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]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 6 | |
| 매우 높은 위험 | 높은 위험 | 다소 높은 위험 | 보통 위험 | 낮은 위험 | 매우 낮은 위험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,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(REITs)자산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, 일본리츠 등 가격변동위험, 환율변동위험, 금리변동위험,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
이 요약정보는 **한화 Japan REITs 부동산 투자신탁 1호(리츠-재간접형)**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·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**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[요약정보]

[투자목적]

이 투자신탁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(REITs)자산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배당이익과 부동산가치의 상승에서의 나오는 자본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※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.

[투자전략]

1) 자산배분전략

투자목적 및 전략 : 일본 리츠에 신탁재산의 60%이상을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추구하며,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투자합니다. 또한, 환율 변동에 대하여 해지를 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해지비율은 변동됩니다.

2) 세부운용계획

- Japan REITs 투자대상 포트폴리오 :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REITs 중 Fundamental이 우수하고 시가총액이 큰 REITs를 대상으로 유동성이 확보된 펀드를 선정(시가총액, 상장기간, 일평균 거래금액 등 고려)
-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밸런싱 : 순자산의 60%이상을 일본 REITs 편입

■비교지수: TSE REITs Index 90% + Call Rate 10%

※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분류 투자신탁, 부동산(리츠-재간접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종류형

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투자비용 | 클래스 | 투자자가 부담하는 |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한화 Japan Reits 부동산투자신탁1호(리츠-재간접형)

| 종류 |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(단위: %) | | | | |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(단위:천원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| 판매 수수료 | 총 보수 | 판매 보수 | 동종 유형 총보수 | 총보수 ·비용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10년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 납입금액의 10% | 0.90 | 0.30 | 0.79 | 1.4052 | 244 | 395 | 554 | 896 | 1,912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1) | 없음 | 1.60 | 1.00 | 2.08 | 2.0823 | 213 | 438 | 673 | 1,179 | 2,685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(A-e) | 납입금액의 0.8% | 0.85 | 0.25 | 1.34 | 1.3764 | 221 | 369 | 525 | 860 | 1,855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-e) | 없음 | 1.40 | 0.80 | 1.55 | 1.8836 | 193 | 396 | 609 | 1,067 | 2,428 |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|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.15% 이내 | 0.85 | 0.25 | | 1.3960 | 143 | 293 | 451 | 791 | 1,800 |

* '1,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'는 투자가 **1,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(판매수수료 + 합성 총보수비용)**을 의미합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, 이익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로 가정하였습니다.

*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-e형과 종류 C-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*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(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.

| 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, 세전기준) | 종류 | 최근 1년 | 최근 2년 | 최근 3년 | 최근 5년 | 설정일 이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2024/03/18~ 2025/03/17 | 2023/03/18~ 2025/03/17 | 2022/03/18~ 2025/03/17 | 2020/03/18~ 2025/03/17 | 2005/03/16~ 2025/03/17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(%) | | 6.23 | 1.74 | 1.13 | 5.40 | 5.12 |
| 비교지수(%) | | -0.73 | -2.44 | -3.20 | 2.06 | 2.65 |
| 수익률변동성(%) | | 11.74 | 10.45 | 10.88 | 16.14 | 16.07 |

* 비교지수 : TSE REITS Index 90% + Call Rate 10% (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)

*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

*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,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| 운용전문 인력 | 성명 | 생년 | 직위 | 운용현황 (개, 억원) | |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해외·부동산)(%) | | 운용 경력년수 |
|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| | | | 집합투자 | 운용 | 운용역 | 운용사 | |
| | | | | | | | | |

한화 Japan Reits 부동산투자신탁1호(리츠-재간접형)

| | | | 기구수 | 규모 | 최근1년 | 최근2년 | 최근1년 | 최근2년 | |
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지은송 | 1995년 | 책임(매니저) | 10 | 754 | 4.58 | 2.80 | 6.21 | 4.87 | 3년 3개월 |
| 강희영 | 1978년 | 부책임(매니저) | 19 | 6,188 | 6.21 | 4.87 | | | 5년 |

* 기준일: 2025.03.17

- * “책임운용전문인력”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, “부책임운용전문인력”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.
- *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*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
- * “운용경력년수”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.

| 투자자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•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•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,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•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•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•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,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투자자(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)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『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』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•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(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)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구 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|
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| | | |
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|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| | | |

| | | | |
|---|---|-------|--|
| |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 | |
| 일본리츠 등 가격변동위험 | 신탁재산을 일본 리츠에 주로 투자하며 이외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,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.. | | |
| 환율변동위험 |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다양한 수단으로 방지할 예정입니다.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을 위한 거래가 완벽히 수행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이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| |
| 세입자 이동 등에 따른 위험 | 리츠수익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.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의 공실률 저하, 세입자 이동, 임대료의 지불채무 불이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 | |
| 금리변동위험 |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부담이 커져 REITs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| | |
| 국가위험 | 이 투자신탁은 해외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,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. | | |
|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|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,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. | | |
|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험 | 수해, 지진, 화산분화, 해일, 화재, 폭발 등의 재해로 인해 부동산이 파손 또는 노화되면 리츠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| | |
| 분리과세관련 과세위험 |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및 보유기간 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받은 분리과세 혜택에 대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. | | |
| ※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
| 매입 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·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| 환매 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8영업일(D+7)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·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|

한화 Japan Reits 부동산투자신탁1호(리츠-재간접형)

| |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 | :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9영업일(D+8)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| | | | | | | |
|---|--|----|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|---|--|--|
| 환매 수수료 | 없음 | | | | | | | | | |
| 기준가 |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2e0bd; padding: 5px;"> 산정방법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5px;"> - 당일 기준가격 = (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– 부채총액) /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-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</div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2e0bd; padding: 5px;"> 공시장소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5px;"> 판매회사 본·영업점, 집합투자업자(www.hanwhafund.com) · 판매회사 ·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(dis.kofia.or.kr)에 게시합니다. </div> | | | | | | | | | |
| 과세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2e0bd;"> <th style="padding: 5px;">구분</th><th style="padding: 5px;">과세의 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집합투자기구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수익자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조세특례제한 법상 공모부 동산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과세특례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받는 배당소득(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)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, 9.9%(소득세 9%, 지방소득세 0.9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다만,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(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)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.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 · C-P(연금저축), C-Pe(연금저축) S-P(연금저축) 수익증권 수익자(연금저축계좌 가입자)에 대한 과세 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· 종류 C-RP(퇴직연금), C-RPe(퇴직연금), S-RP(퇴직연금)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- 퇴직연금 제도의 세제 :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※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</p> | 구분 | 과세의 주요 내용 | 집합투자기구 |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| 수익자 |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| 조세특례제한 법상 공모부 동산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|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받는 배당소득(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)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, 9.9%(소득세 9%, 지방소득세 0.9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다만,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(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)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. | |
| 구분 | 과세의 주요 내용 | | | | | | | | | |
| 집합투자기구 |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
| 수익자 |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| | | | | | | | | |
| 조세특례제한 법상 공모부 동산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|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받는 배당소득(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)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, 9.9%(소득세 9%, 지방소득세 0.9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다만,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(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)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
| 전환절차 및 방법 | 해당사항 없음 | | | | | | | | | |

| 집합투자 업자 | 한화자산운용(주) (대표번호 : 02-6950-0000 / 인터넷 홈페이지 : www.hanwhafund.com)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|
| 모집기간 |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| 모집·매출 총액 | 10조좌 |
| 효력 발생일 | 2025년 3월 28일 | 존속 기간 |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|
| 판매회사 | 집합투자업자(www.hanwhafund.com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| | |
| 참조 |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
| |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,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 |
|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| 종류(Class) |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| |
| | 판매 수수료 | 수수료 선취(A) |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수수료 미징구(C) |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수수료 후취 |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판매 경로 | 온라인 (e) |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|
| | | 오프라인 |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|
| | | 온라인 슈퍼(S) |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(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)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|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|--|
| | | 않습니다. |
| 기타 | 고액 (i) |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랩 (w) |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기관 (f) | 집합투자기구,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개인연금 (P)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"연금저축계좌"의 가입자만 매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퇴직연금 (RP)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(S-RP(퇴직연금)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)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
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

- 증권신고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
- 투자설명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kofia.or.kr),
집합투자업자(www.hanwhafund.com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
- 정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 한국금융투자협회
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
- 자산운용보고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
[홈페이지\(\[www.hanwhafund.com\]\(http://www.hanwhafund.com\)\)](http://www.hanwhafund.com)
- 수시공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
[홈페이지\(\[www.hanwhafund.com\]\(http://www.hanwhafund.com\)\)](http://www.hanwhafund.com)

